

2015.05.12

‘일자리 창출기업 관세 조사대상 선정 제외’

1. 시행배경

-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, 2015년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는 관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함.
- **신청기간: 15년 5월 11일 ~ 15년 6월 5일(오후 6시 마감)**

2.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

- 2014년도 **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인 신청기업이 ‘일자리 창출 계획서’**를 관세청에 제출. (단, 기존 혜택부여 업체는 제외)
- 제조업 중 **수출비중 *70% 이상의 **성실 수출기업이 2015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4~10% 이상 채용할 계획이** 있는 경우
 - * 2014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수출액
 - **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관세 및 내국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, 일정수준 이상의 법규준수도를 충족한 기업

※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 창출 비율

2014 사업연도 수입금액	1천만불 미만	1천만불~5천만불	5천만불~1억불
일자리 창출 비율 * (전년대비)	4% 이상	5% 이상	10% 이상

※ 청년근로자(15~29세 이하), 고령자(60세 이상), 장애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계산시 1인당 1.5명으로 산정